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남구공보

제1276호 2024.1.25.(목)

YOU&NAMGU

선람	기 관 의 장

공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발행·편집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48452)
☎ 607-4068 / FAX 607-4919

공 고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94호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공람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4-94호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부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현)우암·감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본형(권역형) 건강증진 전담기관으로 남구 전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관이므로, 기관명을 남구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변경(안 제3조, 안 별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참조:건강증진과장)에게 서면(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48452)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3(대연동, 남구보건소)
부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참조: 건강증진과장)

○ 전화번호 : 051) 607-6892 (Fax. 607-6419)

○ 이 메 일 : csy8283@korea.kr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http://www.bsnamg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4-94호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우암·감만”을 “남구”로 한다.

별표 중 “우암·감만”을 “남구”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우암·감만 건강생활지원센터, 용호3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문현1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문현2동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 남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별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명 칭	위치	관할구역
우암·감만 건강 생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당로 368(우암동)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감만1·2동
용호3동 건강 생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164번길 40(용호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3동
문현1동 건강 생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 60번길 1(문현동)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동
문현2동 건강 생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92번길 31-7(문현동)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동

관 련 법 령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